

전주지방법원 2021. 12. 21 선고 2021가단806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대한민국

피 고 황00

변 론 종 결 2021. 11 30

판 결 선 고 2021. 12. 21

주 문

1. 피고와 황○○ 사이에 전라북도 ○○시 DD면 □□리1300 답 2,936.8㎡에 관하여 2020. 12. 30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황○○에게 전라북도 ○○시 DD면 □□리1300 답 2,936.8㎡에 관하여익산등기소 2021. 1. 4. 접수 제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 산하 □□세무서장은 2020. 12. 1. 황○○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82,003,950원을 2020. 12. 31.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·고지하였다.

나. 황○○는 ○○시 DD면 □□리1300 답 2,936.8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에 관하여 2020. 11. 29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20. 12. 10. 등기를 마친후 2020. 12. 30. 증여를 원인으로 2021. 1. 4.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다. 한편,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황○○의 재산상태는 다음과 같다.

라. 피고와 황○○는 사촌관계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내지 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주장

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그실질이 증여가 아닌 유상양도라 하더라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,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황○○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말소하여야한다.

나.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

1)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황○○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함으로써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, 이 사건 증여계약은 황○○가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2)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피고는 황○○가 윤□□에게 변제해야할 대여금을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를 받은 것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고, 피고는 사해행위를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윤□□이 2015. 8. 20.

황○○에게 40,000,000원을 송금한 사실, 2021. 3. 2. 피고의 배우자인 김지애가 2021. 3. 2. 윤□□의 계좌로 47,000,000을 이체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하나,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황○○가 윤□□에 대한 차용금을 피고가 대위변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.

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황○○가 윤□□에게 변제해야할 차용금을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간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(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8다85161판결 등 참조)할 것이므로,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.

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,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,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바(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009다60466판결 참조)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.

다. 원상회복의 방법

따라서 피고와 황○○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황○○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21. 1. 4. 접수 제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○○○